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

- 지방법원 재판 충실화 방안 -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2019. 12. 12.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목차]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기초발제자료]

I.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도입 취지	3
II. 주요 외국 법원의 합의부 운영 형태	4
III. 논의 경과	10
1. 시범실시 이전의 논의	10
2. 2019. 2. 25. 시범실시 현황	12
IV. 시범실시 결과 분석	13
1. 시범실시 재판부의 경험 및 의견	13
2. 소송관계인(검사, 변호사) 등 외부 평가	16
3. 사건처리 등 통계 분석	21
V. 최근 확대 논의	23
1. 2019. 12. 2.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23
2. 법원행정처 수요 조사	23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1. 개요	27
2.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 여부	27
3. 확대 범위	32
4. 구성 기준	34
5. 바람직한 운영 방안	35
6. 사법행정자문회의 주요 논의 사항 및 쟁점	38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

- 지방법원 재판 충실화 방안 -

2019. 12. 12.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 가. 2019년 시범실시된 경력대등재판부(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부)는 실질적인 합의 재판을 구현하여 지방법원 재판의 충실화에 기여하였고, 그 구성을 위한 인적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확대 실시가 바람직함
나. 경력대등재판부가 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배치, 형사기록 전자화 등 인적·물적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의 뒷받침이 필요함
다.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 민사 사물관할 기준을 정비하는 등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방법원 항소 재판의 충실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함이 바람직함. 다만 사건의 성질, 중요성, 사회적 영향력 및 법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심 합의부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 가능함
- 경력대등재판부는 희망을 우선으로 하여 구성하되, 희망자만으로 필요한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사무분담 내역 등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때 법조경력, 연령, 성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함이 바람직함
- [제1안: 재판장 변동을 전제로 하는 안]
경력대등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한편 단독화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재판장과 주심 분리가 바람직함
[제2안: 재판장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안]
경력대등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한편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인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재판장은 고정함이 바람직함



[기초발제자료]

I.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도입 취지

1. 도입 취지 ☞ 지방법원 재판의 충실화

- ① 지방법원 합의재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② 구성원의 비대등성 ⇨ 합의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대내외 비판
- 실질적으로 대등한 3인의 숙려에 따른 재판이 합의 재판 본연의 모습 ⇨ 실질적 토론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수직적·관료적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 ⇨ 개별사건에 대한 밀도 있는 심리 기대
- 지방법원 경력대등부는 최소 법조경력 16년차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 ⇨ 경력·지위의 대등 ⇨ 종전보다 경험과 연륜이 높은 법관들에 의한 충실한 심리 ⇨ 지방법원 재판의 역량 강화 ⇨ 종국적으로 국민의 사법·재판 신뢰 향상

2. 법관인력 구조의 변화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의 토대 형성)

- 법조일원화·평생법관제 등 법관인력 구조의 변화 ⇨ 법조경력, 연령 등이 높은 법관 비율이 급증함. 즉 경력대등재판부 구성의 인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었음
- 법관 임용자격(법원조직법)
 -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임용 시 3년 이상
 - 2018.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임용 시 5년 이상
 - 2022. 1. 1.부터 2025. 12. 31.까지 임용 시 7년 이상
 - 2026. 1. 1. 이후 임용 시 10년 이상



▣ 부장판사 신규보임 인원 · 법관 신규임용 인원 수 비교

년도	부장판사 신규보임 인원 ¹⁾	법관 신규임용 인원
2015	124	80
2016	149	129
2017	146	141
2018	145	52
2019	150	36

II. 주요 외국 법원의 합의부 운영 형태²⁾

1. 미국 ☞ 지위 대등을 전제로 3인 실질 합의

가. 연방 항소법원³⁾

▣ 재판부 구성

-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panel)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
-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법원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재판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심리해야 함[28 USC §46(a)].
- 연방항소법원은 일정 기간 고정된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전체 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부를 구성. 재판부 구성원의 경력 차이는 재판부 구성의 고려 사항이 아니고, 선임자는 구술변론 사건의 진행을 위한 재판장의 역할을 함

1) 지법부장 보임 없이 바로 고법판사로 임용된 인원 제외

2) 이하 내용은 대부분 외국사법제도 연구(20), 각국의 합의재판부 구성 및 합의부의 재판방식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2017. 4.) 참조

3) 연방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선거구 배분의 합헌성 여부 등)를 제외하고, 제1심 재판은 단독재판으로 진행되므로, 연방 항소법원을 중심으로 살펴봄.



▣ 재판부 구성원의 업무분장

- 본안재판부 내에서 주심 판사는 별도로 없고, 본안재판부 구성원 판사가 사전 합의를 하지 않으며, 본안재판부 구성원 간 업무는 동등함
- 재판장이라는 직위를 따로 두지 않고, 통상 재판부 내 최선임 판사가 법대 중간에 앉음
- 본안재판부의 각 판사는 3~4명의 전속 로클럭이 있어, 그 로클럭이 메모를 작성하고, 쟁점을 보고함. 각 판사는 자신에게 소속된 로클럭들과 토론을 통해 사건을 준비하고, 대부분 로클럭이 판결 초고도 작성
- 판결문 집필자는 결론에 대한 합의 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지정함

나.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

- 판사 3인으로 합의재판부 구성
- 주지사가 재판부를 특정하여 재판장(Presiding Justice), 배석판사(Associate Justice)를 별도로 임명함 ☞ **재판부 및 재판장 고정형식**
- 사건 배당은 통상 각 1/3씩 받는데, 재판부 협의로 재판장은 배당을 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주심 존재**
- 판사 1명당 4명의 로클럭 배치, 구두 변론 종결 후 바로 결론 합의 진행

2. 독일

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경우

▣ 민사 1심 사물관할

- 독일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 ZPO) 제34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문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단독판사로서 재판함(같은 항 제1문)
- 단독판사는 ① 사건이 사실관계 또는 법률문제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



우(제1호), ② 사건이 중요한(Grundsätzlich) 의미를 갖는 경우(제2호), ③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신청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수에 관한 재판을 하도록 사건을 합의부로 회부함(같은 조 제3항 제1문)

- 독일에서 민사사건은 제1심에서 대부분 단독판사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합의재판부 내에서의 사무분담

- 법원장이나 부장판사만이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음(법원조직법 제21f조 제1항)
- 합의부 내의 사무분담표(Mitwirkungsplan)에 주심(Berichterstatter)이 누가 될지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선고법원의 모든 구성원은 재판에 있어 동등한 권한이 있고, '법률에 정해진 판사'는 있지만 '법률에 정해진 주심'은 없기 때문

■ 합의재판부의 운영

- 실제 독일 법원의 사무분담표를 보면 하나의 재판부에 부장판사 외에 세 명 이상의 판사가 소속되어 있거나, 한 명의 부장판사 또는 판사가 동시에 여러 재판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나. 항소법원 합의 과정

- 원칙적으로 정해진 수의 법관만 합의 및 표결에 관여함. 그러나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 법원에 배치된 사법연수생과 재판연구관도 참석할 수 있음
- 재판장은 합의를 지휘함. 투표는 직업법관은 직무연령에 의하여, 직무연령이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의하여, 명예법관과 참심원은 연령에 의하여 낮은 사람부터 하고, 주심법관이 있는 경우 주심법관이 먼저 투표하고 재판장이 최후로 투표함

3. 프랑스



가. 지방법원의 합의부 구성 및 재판방식

■ 합의제 원칙의 고수

- 현재 프랑스 일반법원의 재판은 합의제(collégialité)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1심의 경우에는 단독판사(juge unique)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함. 나아가 합의재판부는 3명의 '직업법관'으로 구성됨이 원칙이나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 합의재판부 운영방식

- 1심과 2심은 사실심으로서 재판장과 배석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1/3씩 주심으로 사건을 배당받아서 판결초고도 직접 작성. 민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판진행까지 주심판사가 단독으로 진행
- 민사의 경우에는 사실심 절차에서 배석판사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대등경력의 재판부처럼 운영된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합의부의 배석판사를 초임이 많지 않고 수년간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판사가 맡고 또 프랑스 판결문이 매우 간결하기 때문에 가능한 운영방식인 것으로 보임

나. 항소법원의 경우

■ 주심판사의 지정

- 사건은 보통 1명의 주심판사에 의해 심리되는데, 주심판사는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지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변론에서 이루어지지만 기록을 최초로 심리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도 함

■ 재판장과 주심을 정하는 방법

- 고등법원장이 각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재판장과 두 배석판사는 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중 1/3에 관하여 주심이 됨(재판부 구성원 사이에 주심



으로 정해지는 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함)

4. 일본

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구성 및 재판방식

■ 재판부 구성

- 민사 1심 통상부는 전문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균등하게 다루는 재판부로서 재판장 1명, 우배석 2명, 좌배석 1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
- 재판장 20년 이상, 우배석 6~20년, 좌배석 1~3년, 의료집중부와 전문부에서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좌배석의 경력만 4~10년으로 다소 올라가 있음

■ 운영 방식

- 1심의 경우 합의사건은 좌배석이 주심으로 담당하고, 단독사건은 재판장과 우배석이 분담하는데, 통상부일 경우, 재판장 1명과 우배석 2명이 1:2:2로 분담하는 것이 통상임. 다만 우배석이 담당하던 단독사건이 사건이 복잡해지는 등으로 합의에 부쳐질 경우, 해당 우배석이 그대로 주심이 됨

■ 실질적 합의

- 좌배석 주심사건은 경험 많은 재판장, 우배석이 합의에 관여하므로, 주심의 판단에 합의체의 결론이 좌우되는, 이른바 합의재판의 단독화 우려는 적음.
- 우배석 주심사건일 경우, 경우에 따라 재판장과 우배석의 경력 차이가 2~3년 수준에 그쳐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합의 과정에서 각자 의견을 밝히고, 이에 기초한 토론을 상시 하는 실무에서 재판장이 우배석의 의견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함

나. 항소법원 합의부의 구성 및 재판방식

■ 재판부 구성 방식



- 민사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장 1명, 우배석 2명, 좌배석 2명 합계 5명으로 구성되어 재판장 1명이 우배석, 좌배석 2명과 함께 합의체 2개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병환 등 사정이 있을 경우 1~2명 수준에서 변동이 있음
- 재판장 30년 이상, 우배석 25년 이상, 좌배석 15년 이상임

■ 합의 방식

- [신건 합의] 합의는 일반적으로 주심이 1심 기록을 검토해 합의메모를 작성하여 재판장과 다른 배석 재판관에게 나누어주고, 이를 기초해 제1회 구두변론기일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심리방향이 결정됨
- [판결 합의] 재판장과 주심의 2자 합의가 원칙이고, 토론 과정에서 비주심이 법적 의견 등을 개진하는 경우도 간혹 있음. 제1심과 달리 주심의 법조경력 이 15년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기에 주심이 사건진행, 결론에 관한 의견을 주도함. 예외적으로 재판장과 주심과 의견이 엇갈릴 때는 비주심의 의견도 들어 3자 합의로 운영됨

5. 시사점

■ 경력의 대등 여부

- 미국은 주지하듯이 완전한 **법조일원화** 국가임. 미국 연방판사 임명 시 요구되는 법조경력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음⁴⁾. 다만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는 최소 12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권고하고 있고, 연방 항소법원의 경우 대부분 **15~20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임명되고 있음 ⇨ 미국 법원 합의부 구성원의 법조 경력, 지위는 **대등함**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법조일원화를 채택하지 않았고, **부장판사와 평판사 2명이 합의부를 구성하는 등 경력의 면에서 합의부 구성원이 대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는 법관 임명 자격과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법조일원화를 채택하였으므로, 미국 법원의 합의부 운영이나 재판제도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합의제로 운영

- 법조 경력의 측면, 임명 방식의 정치성(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등을 고려하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 합의부가 실질적이고 완전한 3인 합의체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함 (우리나라 대법원 소부와 유사함)
 - 미국 법원은 합의부가 실질적인 합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관마다 **4명의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지원하는 등 인적·물적 여건을 충실히 마련함
-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 국가들은 비록 합의부 구성이 경력 면에서 대등하지 않더라도, 주심을 두지 않거나 재판장이 동등하게 사건을 배당받는 등 실질적인 합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 미국은 제1심 재판은 단독으로, 항소법원은 합의부로만 운영함
- 독일, 일본 등은 합의부 내에서 사건을 단독 사건으로 처리할지 합의 사건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도록 함

III. 논의 경과

1. 시범실시 이전의 논의

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1) 2018. 7. 23. 법관대표회의 의결 ☞ 98명 중 77명 찬성

1. 법원 내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재편하고 사실심의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2019년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중 일부를 대등재판부로 운영하고, 향후 인사 여건에 따라 이를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제안의 주된 취지

- 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인적 구조의 변화(부장판사 증대, 신임 법관 감소)로 재판부 구성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임
- 경력대등부의 장점으로 재판역량 강화, 법원 내 수직적 위계질서 완화, 국민의 신뢰회복 등을 언급함. 한편 **단독화의 우려**는 부심 제도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함

■ 토론 내용 요약

- 장기 과제로 향소법원의 일원화와 맞닿아 있는 면이 있음
- 시범실시 기간 비슷한 기수로 구성하고, 배당감축, 재판연구원 등 지원이 있어야 함
-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사실심리를 충실히 받고 싶어 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1심 합의부도** 경력대등부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단독화 방지는 판사의 양식을 믿어야 함

2) 2018. 11. 19.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 92명 중 80명 찬성

2019년 시범실시되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의 ‘대등재판부’는 희망하는 법관을 우선으로 보임하되, 그 보임대상을 일률적으로 특정한 기수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구성원인 법관은 향후 합의부장 보임 등에 있어서 같은 기간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보다 불이익하게 대우받지 않아야 한다.

■ 제안의 주된 취지

- 2019년 시범실시를 전제로 그 보임기준을 정한 것임
- 30~32기만을 대상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일률적으로 특정한 기수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라는 문구를 넣었음

■ 토론 내용 요약



- 사무분담 기준 권고안의 하나로 발의된 것으로 단독·배석 보임 기준이 주로 논의되고, 경력대등재판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나. 대법원 내부 의견 수렴

- 2018. 상반기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간담회 실시
- 2018. 7. 사법지원실·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간담회
- 2018. 8.~12.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시범실시를 위한 법원간담회 (총 3회)

2. 2019. 2. 25 시범실시 현황

■ 총 24개 재판부 (민사합의 3개, 민사항소 15개, 형사항소 6개)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 10개(민사합의 1개, 민사항소 6개, 형사항소 3개)
- 의정부지방법원 총 2개(민사항소 1개, 형사항소 1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총 1개(민사합의 1개)
- 인천지방법원 총 1개(민사항소 1개)
- 수원지방법원 총 2개(민사항소 1개, 형사항소 1개)
- 대전지방법원 총 2개(민사항소 2개)
- 대구지방법원 총 3개(민사합의 1개⁵⁾, 민사항소 2개)
- 부산지방법원 총 2개(민사항소 1개, 형사항소 1개)
- 광주지방법원 총 1개(민사항소 1개)

■ 기수 분포

- 대체로 법관 간 기수 차이가 4년을 넘지 않음
- 다만 부산지법 민사 5부(26기, 29기, 33기), 고양지원 민사 21부(17기, 29기, 30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16기, 24기, 28기) 등 3개부는 예외적임

5) 2019. 8. 26. 구성



IV. 시범실시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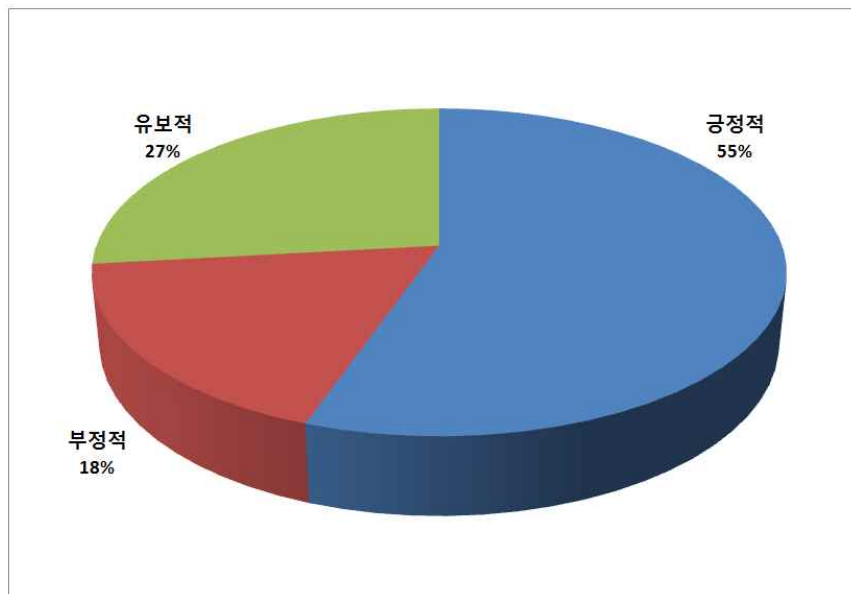
1. 시범실시 재판부의 경험 및 의견

가. 2019. 5.경 간담회

- 16개 재판부 참석
- 시범실시 초기 경력대등부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함
- 확대 여부 및 재판장.주심 일치 여부 등에 대한 찬반론이 제시됨

나. 2019. 6. ~ 9. 찾아가는 간담회 결과

- 경력대등부의 확대 여부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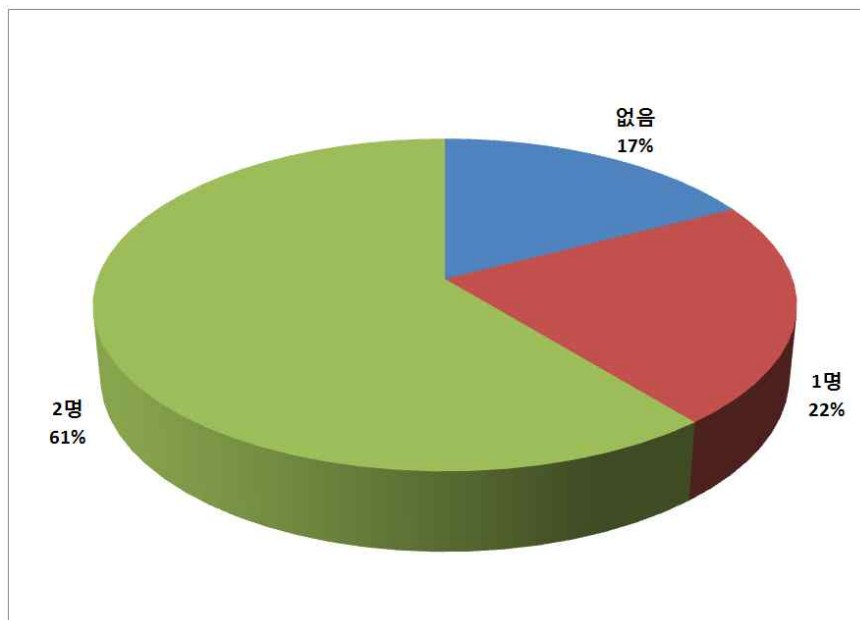




▣ 재판장 · 주심 일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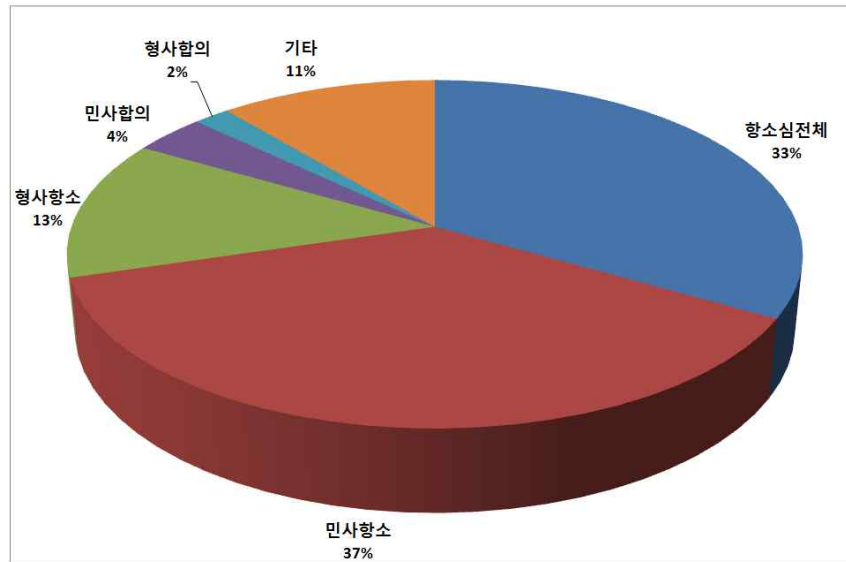


▣ 재판연구원 배치 현황





▣ 경력대등재판부의 적절한 사무분담 ➡ 항소심 83%



다. 2019. 10. 31. 경력대등재판부 세미나 (곤지암 리조트)

▣ 경력대등재판부 법관 51명 참석, 발표 및 토론

▣ 확대 여부

● 확대 (다수)

- 경력대등부 경험 소감: “합의라는 것은 구성원이 대등했어야 했구나, 대등하지 않을 때의 합의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한 것일 뿐 진정한 합의와는 다르구나”

- 진정한 합의부는 구성원의 자격(지위), 정보력이 동일해야 함

● 부정 (전언으로 소개됨)

- 비효율적 ⇨ 처리율 감소 ⇨ 사법신뢰 저하

▣ 확대 범위

● 항소심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견해

- 현재 1심 재판장 다수가 부장판사 ⇨ 항소심을 경력대등부로 운영함이 바람



직함

-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여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
- 합의사건에 대한 확대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

▣ 재판장·주심의 분리 여부에 대해 팽팽한 찬반 의견 대립

- 단독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vs. 효율성, 법관의 양식 신뢰할 필요

라. 분석

▣ 시범실시를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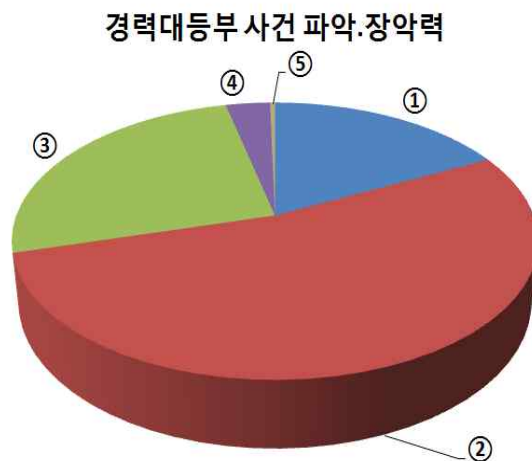
▣ 다만 비효율성, 단독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임

2. 소송관계인(검사, 변호사) 등 외부 평가⁶⁾

가. 긍정적 평가

▣ 사건장악력 높다는 응답: 70.7%

구 분	인원수	비율(%)
① 매우 그렇다	97	17.5
② 그렇다	294	53.2
③ 보통	142	25.7
④ 그렇지 않다	18	3.3
⑤ 매우그렇지않다	2	0.4
합계	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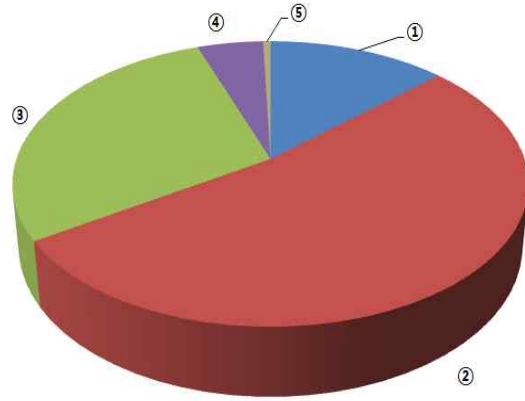
6) 사법지원실이 2019. 8. 21.부터 2019. 9. 10.까지 실시한 3주간의 설문조사, 심층면담 결과임.



▣ 적극적으로 심리한다는 응답: 65.9%

구 분	인원수	비율(%)
① 매우 그렇다	73	13.2
② 그렇다	291	52.7
③ 보통	158	28.6
④ 그렇지 않다	27	4.9
⑤ 매우그렇지않다	3	0.5
합계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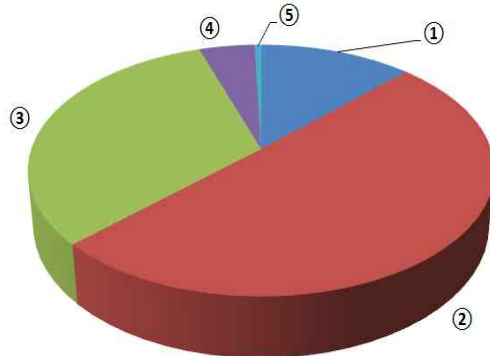
경력대등부 적극심리 비교



▣ 심리가 충실하다는 응답: 62.9%

구 분	인원수	비율(%)
① 매우 그렇다	69	12.5
② 그렇다	278	50.4
③ 보통	177	32.1
④ 그렇지 않다	25	4.6
⑤ 매우그렇지않다	3	0.5
합계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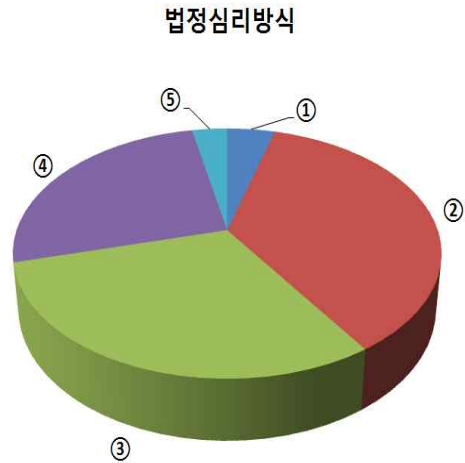
충실한 심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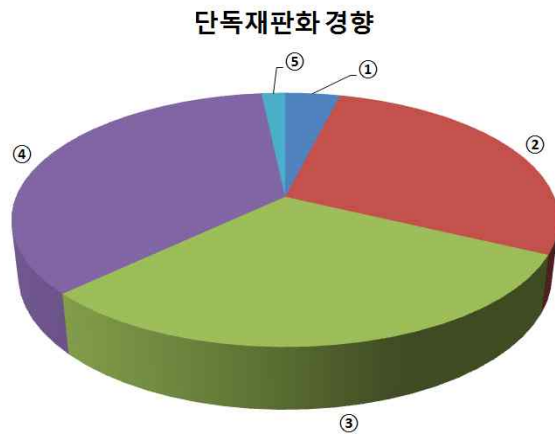
■ 심리방식이 적응되었거나 바람직하다는 응답: 66.6%

구 분	인원수	비율(%)
① 혼란스럽다		4.3
② 초기에는 혼란스러웠으나 적응되어 불편하지 않다		36.4
③ 바람직하다		30.2
④ 잘 모르겠다		25.9
⑤ 기타		3.2
합계	536	



■ 단독화 경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응답: 67.9%

구 분	인원수	비율(%)
① 매우 그렇다.	21	3.9
② 그렇다.	154	28.3
③ 보통	167	30.7
④ 그렇지 않다.	193	35.5
⑤ 매우그렇지않다	9	1.7
합계	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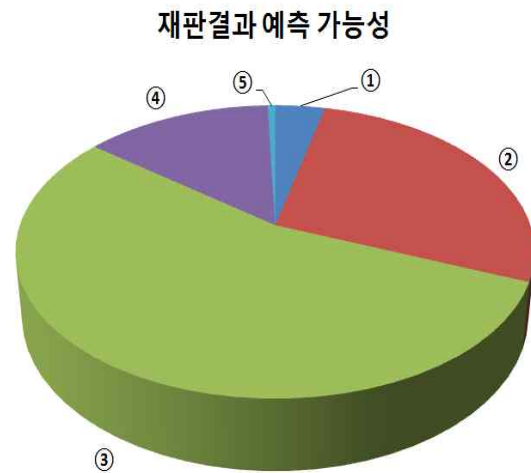


나. 별다른 점이 없다는 평가

■ 결과 예측가능성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 54.4%

경력대등부가 일반재판부에 비하여 재판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인원수	비율(%)
① 매우 그렇다		3.7
② 그렇다		27.4
③ 보통		54.4
④ 그렇지 않다		13.9
⑤ 매우그렇지않다		0.6
합계	540	



■ 결과에 더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응답: 59.5%

실제 항소제기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재판부에 비하여 경력대등부의 재판결과에 더 수공이 되십니까?

구 분	인원수	비율(%)
① 매우 그렇다		4.9
② 그렇다		35.6
③ 보통		53.5
④ 그렇지 않다		5.4
⑤ 매우그렇지않다		0.6
합계	533	





▣ **배당 선호도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 49.8%**

향후 소송대리를 맡은 사건이 어떤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구 분	인원수	비율(%)
① 경력대등부	179	33.1
② 일반재판부	92	17.0
③ 상관없음	269	49.8
합계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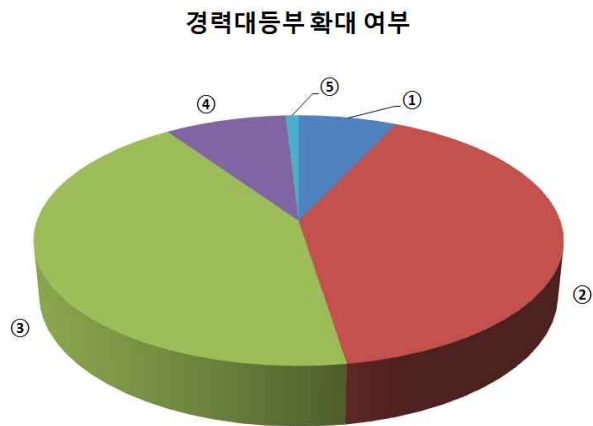


- 다만 경력대등부 33.1% > 일반재판부 17%, 약 2배 차이

다. 경력대등부 확대 여부

경력대등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인원수	비율(%)
① 매우 그렇다.	38	7.0
② 그렇다.	220	40.5
③ 보통	233	42.9
④ 그렇지 않다.	47	8.7
⑤ 매우그렇지않다	5	0.9
합계	543	



- 찬성: 47.5%, 보통: 42.9%, 반대: 9.6%
- [확대 이유] 충실한 재판 · 이상적 합의부: 78.7%, 인사시스템상 불가피: 5.8%



- [확대 반대이유] 단독화: 45.1%, 모름: 31%

라. 분석

- ▣ 재판 결론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음
- ▣ 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는 높은 것으로 보임. 즉 경력이 높은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라는 외관 자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짐작됨
- ▣ 다만 단독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임

3. 사건처리 등 통계 분석 (2019. 2. 25. ~ 2019. 8. 31.)

가. 민사

심급/ 사건구분	법원	조정 화해 율 (%)	처리 율 (%)	상소 율 (%)	종국 률 (%)	평균처 리일수	평균 기일 횟수	실질		
								실질 조정 화해율 (%)	실질상 소율 (%)	실질종 국률 (%)
합의	대등재판부	26	81.4	15.3	84.7	275.3	4.15	39.1	25.5	74.5
	전국법원	10.1	89.8	20.7	79.3	292.3	3.99	14.4	31.9	68.1
항소	대등재판부	22.7	91.6	15.3	84.7	226.0	2.10	28.5	19.2	80.8
	전국법원	22.2	98.0	16.3	83.7	245.9	2.19	27.6	20.2	79.8

▣ 민사합의 대등부

- 실질조정·화해율 높음 39.1% (지방법원 평균 14.4%)
- 상소율 낮고, 종국률 높음
- 반면 처리율은 낮은 편임 81.4% (지방법원 평균 89.8%)



▣ 민사항소 대등부

- 실질조정·화해율이 다소 높음 28.5% (지방법원 평균 27.6%)
- 상소율 다소 낮고, 종국률 다소 높음
- 반면 처리율 낮음 91.6% (지방법원 평균 98%)

나. 형사

법원	처리율 (%)	상소율 (%)	평균처리 일수	평균기일 횡수	원심파기율 (%)	양형변경률 (%)	양형감경율 (%)
대등재판부	93.5	31.4	150.4	1.9	33.0	27.6	20.2
전국법원	95.5	33.5	158.9	1.8	31.3	24.3	17.0

- 상소율 다소 낮음 31.4% (전국법원 평균 33.5%)
- 양형변경률, 감형률 다소 높음 ⇨ 파기율 다소 높음
- 처리율 다소 낮음

다. 분석

- ▣ 먼저 시범 실시 초기 6개월간의 통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 민사합의 대등부가 조정·화해율이 크게 높은 것을 제외하면, 대등부와 비대등부 사이에 사건 처리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이는 결과에 있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소송관계인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면이 있음
- ▣ 다만, 처리율이 감소한 것은 공통적임 ⇨ 경력대등부의 구성, 운영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됨



V. 최근 확대 논의

1. 2019. 12. 2.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105명 중 80명 찬성

각급법원은 경력대등부의 시범실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경력대등부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그 방안과 재판연구원 배치 등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안의 요지

- 실질 3인 합의를 통한 충실한 심리, 법원 인력구조상 불가피함
- 경력대등부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고, 조정률·종국률은 높은 편이며, 상소율은 낮음 ⇨ 시범실시 결과가 긍정적임
- 적어도 항소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기록화 등 인적·물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2. 법원행정처 수요 조사

- ▣ 법원행정처에서 2019. 11. 전국 지방법원(지원 포함)을 상대로 2020년 경력 대등재판부 수요조사를 실시함.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연 번	소 속	2019. 합의제 재판부	2019. 경력대등부 (사무분담)	2020. 합의제 재판부	2020. 경력대등부 (사무분담)	비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65	10 (민합1, 민합6, 형합 3)	65	14 (미정)	
2	서울가정법원	5	0		0	
3	서울행정법원	11	0		0	
4	서울회생법원	10	0		0	
5	서울동부지방법원	12	0	12	2~4 (미정)	*설문조사 결과 2개 37%, 4개 40%



연 번	소 속	2019. 합의제 재판부	2019. 경력대등부 (사무분담)	2020. 합의제 재판부	2020. 경력대등부 (사무분담)	비고
6	서울남부지방법원	14	0	14	2 (민항1, 형항1)	
7	서울북부지방법원	10	0	1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	10	0	10	2 (민항2 또는 민항1 + 형항1)	재판연구원2명, 판사실 공사 필수
9	의정부지방법원	17	2 (민항1, 형항1)	17	2 (민항1, 형항1)	
	고양지원	3	1 (민합1)	3	1	
10	인천지방법원	20	1 (민항1)	20	2 (민항1, 형항1)	
	부천지원	3	0	3	0	
11	인천가정법원	1	0	1	0	
12	수원지방법원	31	2 (민항1, 형항1)	31	4~6	희망자 수를 감안하여 4~6개 예정
	성남지원	5	0	5	0	
	여주지원	2	0	2	1	
	평택지원	2	0	2	0	
	안산지원	5	0	5	0	
	안양지원	3	0	3	0	
13	수원가정법원	1	0	1	0	
14	춘천지방법원	5	0	5	1 (민사항소)	
	강릉지원	3	0		0	
	원주지원	1	0		0	*합의부 증설 시 경력대등부 운영 가능
	속초지원	1	0		0	
	영월지원	1	0		0	
15	대전지방법원	17	2 (민항2)	17	3~4 (민항2, 형항 1~2)	



연 번	소 속	2019. 합의제 재판부	2019. 경력대등부 (사무분담)	2020. 합의제 재판부	2020. 경력대등부 (사무분담)	비고
	천안지원	3	0	3	0	
	홍성지원	1	0	1	0	
	서산지원	2	0	2	0	
	공주지원	1	0	1	0	
	논산지원	1	0	1	0	
16	대전가정법원	2	0		0~1 (미정)	부장판사1명 증원되면 긍정적
17	청주지방법원	8	0	8	1 (민항)	
	충주지원	1	0	1	0	
	제천지원	1	0	1	0	
	영동지원	1	0	1	0	
18	대구지방법원	20	3 (민합1, 민항2)	20	4 (민항3, 형항1)	
	서부지원	2	0		0	
	안동지원	1	0		0	
	경주지원	1	0		0	
	포항지원	2	0		0	
	김천지원	1	0		0	
	상주지원	1	0		0	
	의성지원	1	0		0	
영덕지원	1	0		0		
19	대구가정법원	2	0		0	
20	부산지방법원	20	2	20	2	협의되지 않음, 12월 재논의 예정
	동부지원	3	0	3	0	
	서부지원	2	0	2	0	
21	부산가정법원	2	0	2	1 (가합1 또는 가항1)	*재판연구원 반드시 배치 요망
22	울산지방법원	9	0	9	1	민사합의부 증설 시 2개 경력대등부



연 번	소 속	2019. 합의제 재판부	2019. 경력대등부 (사무분담)	2020. 합의제 재판부	2020. 경력대등부 (사무분담)	비고
						가능
23	울산가정법원	3	0		0	
24	창원지방법원	13	0	13	2	
	마산지원	1	0	1	0	
	진주지원	2	0	2	0	
	통영지원	2	0	2	0	
	밀양지원	1	0	1	0	
	거창지원	1	0	1	0	
25	광주지방법원	15	1 (민항)	15	2 (민항2)	
	목포지원	2	0		0	
	순천지원	4	0		0	
	장흥지원	1	0		0	
	해남지원	1	0		0	
26	광주가정법원	1	0		0	
27	전주지방법원	8	0	8	2	
28	제주지방법원	4	0	4	0	
합계			24 (민합3, 민항 15, 형항 6)		50~56	

■ 전문법원, 제주지법을 제외한 모든 본원에서 실시 예정

- 전문법원 중 부산가정법원 실시 예정

■ 지원 중 고양지원, 여주지원 실시 예정

■ 20개 법원 50~56개 재판부에서 실시 예정

■ 2020. 2. 6.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각급법원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위 수요조사 결과보다 확대될 가능성 있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1. 개요

가. 경력대등재판부 관련 회의 경과

- ▣ 제1차 회의 : 2019. 11. 1. 오후 3시 ~ 7시
- ▣ 제2차 회의 : 2019. 11. 25.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나. 논의 사항

-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 여부
- 확대범위 (적절한 사무분담, 재판연구원 배치 등)
- 구성기준 (희망 여부, 경력 분포 등)
- 바람직한 운영방안 (사무분담 기간, 재판부 운영 형태 등)

2.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 여부 ☞ 확대 의견 (전원 일치)

가. 확대 찬성 근거

▣ 법원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살펴보면, 경력대등부 확대는 시범 실시 단계에서부터 확대가 예정되어 있었고, 최근에도 확대를 의결하는 등 내년에 그 시행을 확대하는 것에 법관 사회 다수 동의는 있다고 보임.
- 실제 2019년 경력대등재판부를 경험한 법관 다수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임
- 다만 실제 경력대등재판부 경험이 없는 부장판사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 거부감이 감지됨

▣ 소송관계인(검사·변호사) 측면

-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경륜 있는 법관 세 명이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소송관계인들이 **절차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됨

- 다만 재판 결과에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나, 재판 결과는 어떤 판사가 재판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반응은 오히려 법원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면도 있음
- 검사,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이 **경력대등부의 취지**를 높이 평가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임

■ 통계 관련

- 민사합의부의 조정률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 일반 재판부와 통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오히려 **사건 처리율이 일부 감소한 점**이 있으나, 경력대등재판부 취지에 비추어 이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 소결론

- 법원 내 폭넓은 공감대, 소송관계인들의 **호평** 등에다가 **3인 실질 합의가 법이 합의 재판을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경력대등재판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자연스럽게 보임 ⇨ 결과적으로 **지방법원 재판의 충실화**로 이어짐
- 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로 법원 인력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경력대등재판부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재판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법원 인력구조의 변화 때문에 **경력대등재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충분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그 동안 합의부 재판을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로 **인적 여건이 마련**되었으므로,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을 통하여 합의부 재판을 더욱 충실화하는 **제도 개선**을 하게 되었음이 강조되어야 함



- 이러한 접근방식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사항, 시범 실시 재판부 법관들의 다수 의견, 소송관계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나. '실질 합의' 의 정도에 관한 논의

▣ 모든 사건에 3인 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

- 경력대등재판부의 취지에 충실하게 재판부 구성원 모두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 실질 합의가 3명 모두 기록을 보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 실질 합의가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정도까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실질 합의를 추구하면서도 효율성도 도외시할 수 없음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견해

- 모든 사건에 3인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
- 통상적인 사건은 쟁점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쟁점이 어렵거나 중요한 사건 등은 따로 선별하여 3인 모두 기록을 검토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견해

다. 인적·물적 여건의 조성을 위한 노력

▣ 재판연구원 등 확대

- 경력대등재판부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등 보조 인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고등법원도 재판연구원을 배정함에 있어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를 배려할 필요가 있음
- 법원사무관 역할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법원사무관에게 재판연구원과 유사한 직위를 부여하고, 재판 연구 업무를 맡기자는 제안도 있음



▣ 형사소송 전자화

- 민사 사건은 대부분 전자화되어 재판부 구성원끼리 기록을 공유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음
- 형사 재판부의 경우, 원활한 기록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자화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라. 관련 제도 개선 제안 (장기 과제)

▣ 사물관할 기준 점검 ⇨ 1심 단독 재판의 확대

- 경력대등재판부는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법관 3인을 투입하는 것이고, 향후 법조일원화로 법관들의 연령, 법조 경력은 갈수록 상향될 것임 ⇨ 경력대등 재판부는 그 무게감에 걸맞은 사건을 담당해야 함
- 현재 사물관할을 나누는 기준을 정비하여 합의 사건 비율을 낮추고, 단독 사건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의 관점
- 미국은 1심이 단독재판으로 운영되고, 독일이나 일본은 총괄재판부 형태의 합의부 운영으로 합의부 내에서 단독 사건으로 처리할지 합의 사건으로 처리할지 결정함. 특히 독일은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민사 사건의 합의 재판 비율이 크게 낮아짐 ⇨ 즉 주요 선진국은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추구하고 있음.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1심 재판 사법자원 분배 방식은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음
- 단기적, 중기적으로 합의 재판 비율을 줄이는 사물관할 조정이 필요함
- 2019. 12. 2.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심 단독재판 확대에 대한 의견 표명”을 의결하였음

대법원은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1심 단독재판을 확대하고, 소가·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사회적 중요도와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합의재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반대의견]** 경력대등재판부 도입과 무관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합의부 재판



의 장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심 단독 재판 확대는 선불리 논의할 것이 아님

■ 항소심의 구조 개선 논의

- 1심의 사물관할 조정과 병행하여 항소심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법조경력이 높은 항소심에서는 사실심리보다는 법리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강화된 사후심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반면 1심의 단독 재판을 확대해야 하고, 그것이 법원 인력 구조 변화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라면, 적어도 항소심은 지금보다 속심적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함 (변호사 위원들 입장)

■ 항소법원의 일원화

- 항소 재판이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항소심으로서의 표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음
-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관련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항소법원 일원화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마. 기타 의견

■ 비부장판사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구성안

- 경력 10~15년 이하의 비부장판사로만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구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
- 부장판사 외의 법관이 재판장이 되는 경우 관련 규정상 대법원장 승인이 요구되는데, 그 취지에 비추어 예외적인 상황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 있음



3. 확대 범위 (적절한 사무분담)

가. 지방법원 항소 재판의 충실화

▣ 심급제도 취지 고려

- 현재 제1심 단독재판장 다수가 부장판사이므로, **심급제도의 본질상** 지방법원 항소부 구성원이 부장판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움. 현재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이 대부분 경력 16년 이상의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 항소부도 유사한 구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계적으로 지방법원 항소부에 경력대등재판부를 확대하고, **종국적으로는 모든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부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의 충실화**
- 고등법원과 항소 재판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항소법원 통합 등 심급 제도의 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음

▣ 현실적 고려

- 1심 판결로 쟁점이 압축되고, 판결서 작성의 부담도 비교적 덜한 항소심 재판이 경력대등재판부에 적합하다고 보임
- 실제 시범재판부 구성원의 83%가 항소심이 적절한 사무분담이라고 응답하였고, 2018. 7. 23.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도 같은 취지임
- 법원행정처가 전국 지방법원(지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경력대등 재판부 수요 조사 결과, 사무분담까지 정한 곳은 대체로 항소부를 하겠다고 한 법원이 많음

나. 1심 합의부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건의 성질, 중요성, 사회적 영향력, 법원 사정 등의 고려

- 현재 서울중앙지법 지재전담부, 대구지법 민사부, 고양지원 민사부 등 3개 민사합의부가 경력대등재판부로 운영되고 있음
- 지재전담부의 경우 모두 희망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건의 성격상 사실 인정



보다는 법리 판단이 많아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이 적합한 측면이 있음

-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부패, 선거 전담 형사합의부의 경력대등재판부 구성 논의가 있음
- 성남, 안산, 평택 등과 같이 큰 규모의 지원의 경우, 법관 인력 구조상 경력대등재판부 수요가 있을 수 있음
- 결국 사건의 성질, 중요성, 사회적 영향력, 법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1심 합의부도 경력대등재판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 항소심과 1심 합의부 모두 동등하게 대상이 된다는 견해 (2인)

■ 논거

- 현재 지방법원에서는 1심 합의부 사건이 항소부 사건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음. 즉 합의부 사건이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취지에 더 부합함
- 1심 합의부에 경력대등부가 1~2개라도 생기면 그 대등한 문화가 일반합의부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합의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됨
- 항소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추후 1심 합의부로의 논의 확장이 제한될 수 있음

■ 반론

- 현 단계에서는 지방법원 항소부의 재판 충실화를 우선적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선명함
- 재판장의 경륜과 젊은 판사의 패기와 활력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고, 재판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므로, 1심 합의부 구성문제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함

라. 재판연구원 관련

■ 배치가 바람직함

- 재판연구원 배치가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현재 경력대등재판부 4개(전체 17%)가 재판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다만 경력대등재판부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재판연구원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함

▣ 법원사무관 활용 의견 있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원사무관에게 재판연구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의견
-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재판연구원과 유사한 직위(예 : 법원조사관)를 부여하여 재판연구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음

4. 구성 기준

가. 희망 여부

▣ 희망 우선

- 희망을 우선으로 하는 법관 인사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함

▣ 형평성 고려

- 희망자로 필요한 수의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사무분담 내역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해야 함

나. 경력 분포

▣ 다양성 추구

-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기수, 연령, 성별 등 재판부 구성원의 다양성이 요구됨. 사건을 합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법관은 경력이 대등한 것으로 전제할 수 있고, 실제 30년 이상의 법관들도 부장판사의 법조경력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9. 10. 31. 경력대등재판부 세미나에서도 다양한 세대, 기수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16기, 25기, 28기로 법관으로, 고양지원 경력대



등 민사합의부는 17기, 29기, 30기 법관으로, 부산지법 민사5부는 26기, 29기, 33기로 구성되어 있음

▣ 현실적으로 경력대등재판부 법관의 의사를 반영해야 함

- 실제 구성에 있어 각급 법원의 인력 구조, 구성원에 대한 희망은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대법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 구체적인 기수 차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5. 바람직한 운영방안

가. 사무분담 지속기간

- 현재 시범실시 경력대등재판부의 근무 기간은 1년을 예정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사무분담 2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재판의 연속성, 안정성 관점에서 2020년부터는 **2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
- 다만 재판장 고정방식으로 경력대등재판부를 운영할 경우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4조 제3항ㄱ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재판장 고정 여부

▣ 재판장을 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5인)

- 재판장 변경 방식이 구성원 사이의 대등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됨

7) 제4조 (사무분담의 확정)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장인 법관 :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 1년

☞ 경력대등재판부 재판장이 고정되는 경우, 재판장 아닌 법관의 근무기간이 2년이라는 취지의 규정이 요구됨



- 소송관계인 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판장 변경 방식이 혼란스럽다는 의견은 4.3%에 불과함
- 재판장 고정방식으로 각 1/3씩 배당하면, 재판장 업무 부담이 과중함. 한편 재판장 배당을 줄이면서까지 재판장을 고정할 필요는 없음

■ 재판장을 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견해 (4인)

- 재판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당사자 관점에서는 안정적임. 현재 부산지법 경력대등재판부는 재판장 고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력대등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이 고정되어 있어도 지위 대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고법판사로 구성된 고등법원 재판부의 경우를 봐도 그러함
- 재판장은 사건의 형식적 진행에 그치고, 주심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주도해야 함

■ 입장 유보 (1인)

다. 재판장 변동 시 재판장·주심의 일치 여부

■ 단독화 방지의 필요성

- 경력대등재판부 제도에 대한 직관적인 우려는 합의부의 형해화, 즉 단독화임
- 단독화의 우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내용, 시범실시 재판부 의견, 소송관계인들에 대한 확대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 내용(단독화 우려가 가장 많은 45.1%임) 등에 비추어 봐도, 성공적인 경력대등재판부의 장해 요인임
- 단독화 방지의 제도적 장치로 재판장·주심의 분리가 언급되나, 그 찬반 대립이 팽팽함

■ 재판장·주심 일치 여부에 대한 시범실시 재판부 현황

- 일치 70%, 불일치 22%, 재판장 고정 방식 8%

■ 견해의 대립



● 일치설의 논거

- 단독화 문제는 일치·불일치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판사 양식의 문제
- 효율성, 구술주의·공판중심주의에 부합
- 불일치는 오히려 2인 합의로 운영될 수 있음
- 부심제 운영으로 보완

● 불일치설의 논거

- 단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 판사 양식에만 맡길 수 없음
- 비효율성으로 인한 업무부담은 경력대등재판부를 운영하는 이상 감수해야 함

▣ 검토 ☞ 불일치 (다수 의견)

- 재판장과 주심의 분리는 권한 배분의 문제로서 그것이 합의부 운영의 원칙임. 대법원 소부도 재판장과 주심이 분리되어 있음
-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지는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음
- 법관의 양식에 대한 신뢰와 무관하게, 단독화 방지에 대한 최소한의 외형적 장치는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반대의견(1인)] 사건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판장과 주심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오히려 재판장(=주심)의 책임감이 강화되는 면도 있음

라. 재판장·주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필요 여부

▣ 재판장 고정, 재판장·주심 일치 여부가 온전한 재판사항은 아님

-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배당은 법원장의 권한임 ⇨ 재판부가 자율적으로 재판장이 배당받을지, 주심을 따로 두어 배당받을지 결정할 것은 아님. 즉 재판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한 재판부에 재판장이 고정되어 배당이 이루어질 것인지, 재판장이 변동되는 경우 재판장이 누구이고, 주심은 누구인지 여부는 재판 신뢰와 관련된 재판 절차 외관의 문제이므로, 당사자, 소송관계인 등에게 통일된 기준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음

6. 사법행정자문회의 주요 논의 사항 및 쟁점

-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 여부**
- **적절한 사무분담 - 항소부를 우선할 것인지, 1심 합의부와 병행할 것인지**
- **구성기준 (희망 여부, 경력 분포 등)**
- **바람직한 운영방안**
 - 사무분담 기간을 원칙대로 2년으로 할 것인지
 - 재판장을 고정할 것인지
 - 재판장이 변동되는 경우, 재판장·주심의 분리 여부